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7. 11 선고 2019나10654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7. 11 선고 2019나10654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19. 1. 17 선고 2018가합53248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중석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19. 5. 16.

판결 선고2019. 7. 11.

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가합5324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44,728,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2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엄상필

판사남혜영

판사이효제